(사업방법서 별지)

사 업 방 법 서

1. 보험종목의 명칭 : 해마다축하 단체상해보험

2. 가입연령 : 15세이상

3. 보험기간 : 3년, 5년, 7년, 10년만기

4. 보험료 납입방법 : 월납

5. 보험료 납입기간 : 전기납

6. 부가하는 특약 : 교통상해특약, 휴일상해특약, 재해입원특약, 재해관련특약, 산업재해보장특약, 특별조건부특약, 신용카드이용보험료납입특약, 암보장특약

7. 배당에 관한 사항 :
회사는 매 사업년도말에 이 보험으로부터 생기는 이익잉여금 중에서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자이익배당금을 적립하고 이 이익배당금의 지급은 금융감독원장이 인가하는 방법에 의함.

8. 기 타

가. 대상단체 및 피보험 단체

1) 대상단체

가)동일한 회사, 사업장, 관공서, 국영기업체, 조합 등 5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집단으로 한다.
그러나, 다만, 사업장, 직제, 직종 등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의 단체소속 여부 는 관련법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나)비영리법인단체 또는 동업자 단체(변호사회, 의사회 등)로서 5인 이상의 구성원을 가진 집단으로 한다.

2) 피보험 단체
피보험단체는 동일한 보험계약을 체결한 5인 이상의 피보험자의 집단을 말하며, 단체에 소속된 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성한다.

나. 보험계약자

보험계약자는 단체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 한다.
다만, 단체의 구성원이 보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구성원이 배당금의 청구, 약관대출, 임의해지 등에 대하여 계약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다. 개별계약으로의 전환

피보험자가 퇴직 등으로 인하여 피보험단체에서 탈퇴하는 경우에는 개별계약으로 취급하여 계약을 계속할 수 있다.

라. 피보험자의 변경

계약자가 보험료를 전액부담하는 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이 보험에서 담보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사망하였거나 퇴직 등의 사유로 해당 단체에서 탈퇴하는 경우 계약자는 새로운 피보험자의 동의 및 회사의 승낙을 얻은 후 피보험자를 변경할 수 있다.